

미국 남북전쟁 전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흑인노예

오 영 인

I. 서론

지난 2015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인종혐오로 인한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그 희생자를 기리는 장례식에 참석한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는 추모연설 도중 체로키(Cherokee)족의 애국가로 알려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부르며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¹⁾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체로키족은 2007년 3월 소위 ‘검은 인디언’이라 불리는 흑인노예 후손과 흑인혼혈에게서 부족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부족별로 차이는 있으나 체로키족을 포함한 원주민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흑인노예를 해방시키고 부족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데 1887년 연방정부는 도스법(The Dawes Act of 1887)을 통해 부족공동체라는 원주민의 전통적 조직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원주민 집단소유지를 부족원들에게 개별 분배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부족원 등록을 받았다. 이때 순수 원주민 혈통인 부족명부와 혈통과 관계없는 흑인명부로 두 가지 명부를 작성했는데, 1980년대부터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이미 순혈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체로키 지도부가 2007년 부족원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1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명부에서 순수혈통명부에 등록된 부족원의 자격만을 인정하겠다는 표결에 무려 76%가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²⁾

1)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1506282209225#c2b> (검색일: 2022. 09. 30)

2) 체로키족은 2000년 기준 총인구 32만 명의 미국 내 원주민 중 가장 큰 민족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882952>; <https://www.yna.co.kr/view/AKR20070305102800009> (검색일: 2022. 05.25). 1887년 도스법(The Dawes Act of 1887)과 그 의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참조. 오영

흑인노예와 마찬가지로 원주민 역시 유럽백인에 의해 노예로 매매되었던 역사가 있다. 유럽인의 신대륙 도착 이후 토지를 놓고 백인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던 원주민들은 전쟁포로로 노예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노예무역업자들에 의해 경매대상이 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노예가 된 원주민들은 남부 대농장에서 흑인노예와 함께 노동력으로 착취당했다. 그 수를 보면, 예컨대 170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총인구 9,850명 중 흑인노예가 2,900여 명 그리고 원주민노예 또한 1,4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³⁾ 뿐만 아니라 부족별 차이는 있으나 남북전쟁 이전 원주민 부족은 흑인 도망노예의 피난처가 돼 주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 원주민과 흑인은 억압받는 비(非)백인 소수자라는 동질감 속에서 수 세기 동안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순수혈통 운운하며 흑인을 부족원 지위에서 배제한 원주민 체로키의 판결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미국 역사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주제 중 하나는 아마도 오랫동안 노예제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원주민의 경우, 흑인처럼 백인의 노예이기도 했지만 흑인을 노예로 소유하기도 했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노예가 해방되기 전까지 미국 원주민들 특히 소위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The Five Civilized Tribes)”으로 알려진 체로키, 크리크(Creek), 세미놀(Seminole), 치카소(Chickasaw), 초cto(Choctaw)족들은 노예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실제 남북전쟁 중 남부연합(Southern Confederacy) 편에 참전하여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얼핏 보면, 원주민 노예소유주들도 남부백인과 마찬가지로 노예라는 대체노동력에 의존하여 원주민 경제를 유지했고, 물론 강제 이주였으나 서부팽창기 노예와 함께 서부로 이주하여 기존의 남부 노예제도를 그대로 이식했으며 결국 남북전쟁으로 노예를 해방시켰던 역사를 보여준다. 대체로 원주민들의 노예제도를 남부백인 노예제도의 복사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원주민의 노예문화를 그리고 흑인과의 관계를 백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인, 「20세기 전환기 미국 원주민 동화교육과 새로운 시민정체성을 찾아서」, 『동국사학』, 72집(2021), 385~386쪽.

3)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Frederic E. Hoxi & Peater Iverson, eds., *Indians in American History* (Illinois: Harlan Davidson, Inc., 1998), p. 190.

미국 원주민들의 노예문화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랜 역사를 갖는다. 원주민 부족사회는 일종의 관습으로서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 얻은 포로를 노예로 부리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제물로 희생시키는 풍습이 있었다. 당시 원주민들에게 전쟁포로인 노예란 전쟁을 통해 소모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대체인력이었지 재산으로 소유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다. 다만, 노예가 교환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부족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간 부족원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였다.⁴⁾ 그런데 18세기 후반 19세기를 걸쳐 백인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원주민들의 노예에 대한 인식은 인종편견이 덜해진 훨씬 파괴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남부백인 문화 중 원주민 사회가 받아들인 가장 충격적인 것이 매매 가능한 재산으로서의 노예제도이다. 19세기 미국인들은 원주민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미국적 삶을 받아들인 “진보의 상징(as an indicator of progress)”이자 백인으로의 동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간주했다. 역사학자 마이클 도란(Michael F. Doran)이 지적하듯 당시 문명화론을 신봉했던 백인입장에서 원주민들의 흑인노예 소유는 야만성에서 문명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문화적 올바름(Cultural Correctness)”을 보여준 상징적 현상 중 하나였다.⁵⁾ 물론 미국인들은 동시에 이러한 문명과 진보가 절대적으로 누구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진보의 등급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 또한 잊지 않고 상기시켰다.

백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세뇌시키면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비백인 사이의 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었다. 농경지확보를 위해 원주민과 잦은 전투가 벌어지면서 원주민을 노예화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흑인노예 또한 증가했다. 이에 백인들은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반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와 두려움을 표출했다. 실제로 크리크족과 세미놀족의 경우 흑인노예를 백인과의 전투에 투입하며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빈번히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역사학자 윌리엄 윌리스(William S. Willis)의 용어를

4)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Negro History Bulletin*, 38-7(1975), p. 465; Katja May, *Collusion and Collision: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in the Creek and Cherokee Nations, 1830s-1920s* (London/New York: Taylor & Francis, Routledge, 1996), p. 72.

5)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8-3(1978), p. 335.

빌리자면 “분리지배(Divide and Rule)” 즉,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인종 간 연대를 막고 분리하여 지배하는 것이었다.⁶⁾ 분할통치로도 번역되는 “Divide and Rule”의 사전적 의미는 지배기술 중 하나로 피지배자를 분열 시키거나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수법이다. 다시 말해, 내부분열을 통해 단결을 방해하고 지배층에 대한 저항을 봉쇄하자는 것이다. 이제 백인들은 의도적으로 원주민과 흑인노예 사회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남부 백인들은 흑인노예들에게 원주민들의 잔혹성과 야만성을 과장하여 퍼뜨리면서 원주민을 죽이거나 도망노예에 대한 포상으로 원주민을 거래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반면에 원주민들에게는 흑인과의 피부색 차이를 근거로 원주민의 상대적 우월성을 자극하면서 원주민의 노예소유를 문명화의 상징으로 인정해줬던 것이다.⁷⁾ 같은 맥락에서, 원주민에게 부여했던 “고귀한 야만(noble savage)”이라는 모순된 정체성 또한 인종 간 분리를 의도한 획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사실 노예제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과에서 학제적으로 두텁게 연구되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연구대상이 오로지 인종적으로는 백인노예주와 흑인노예라는 양(兩)인종 관계에, 공간적으로는 북부와 남부지역에 머물러있다는 점이다. 미국 원주민의 역사 또한 노예제도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원주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백인, 원주민, 그리고 흑인노예(후에 해방된 흑인)와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료의 부족이다. 19세기 전반 약 50여 년간 원주민의 노예제도나 흑인노예의 상태 등은 주로 부족 방문객의 산발적 메모나 인쇄물로 출간된 기록 혹은 인디언문제(Indian Affairs) 관련 연방 에이전트의 남겨진 내부 편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공식 기록은 “인디언문제위원회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s of the Commissioner of Indian Affairs)” 기록이 전부이다.⁸⁾

6) Willian G. McLoughlin, “Red Indians, Black Slavery and White Racism: America’s Slaveholding Indians”, *American Quarterly*, 26-4(1974), p. 369, 재인용.

7) *Ibid.*, p. 369;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90-191.

8)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 pp. 342-343. 노예를 해방시키기 전까지 미국 원주민이 소유했던 노예의 수

미국 노예제도 연구에서 원주민이 주목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째, 다양한 원주민 부족의 개별적 역사 경험을 무시하고 원주민의 노예제도를 백인의 노예제도와 뭉뚱그려 마치 동일한 노예문화를 향유한 것으로 단순 등치시켜 설명해왔다는 점과 두 번째, 어느 한 부족의 경험을 원주민 전체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그것을 당연시했던 오류에 기인한다. 그러하다 보니 원주민들과 흑인노예와의 인종 간 관계에 대한 견해들은 거의 도식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예컨대, 원주민들은 남부 백인의 흑인노예에 대한 인종인식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흑인을 도저히 문명화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했다는 견해가 한쪽 극단에 있다면 다른 한쪽은 그 반대이다. 즉, 미국 원주민과 흑인의 관계는 언제나 우호적이어서 마치 모든 부족원들이 노예제폐지를 지지했고 따라서 도망노예의 피난처를 마련해주기도 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⁹⁾ 물론 21세기 들어 원주민 부족들의 다양한 사례연구가 진행되면서 흑인노예에 대한 부족 간 인식의 유사점과 차이점 혹은 특이점에 대한 견해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노예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적 증감에 대한 기록 역시 거의 없다.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두 가지가 전부인데 하나는 1830년대 인디언 강제이주 시기 연방군이 인디언의 이동과 시기 등을 통제/관리하고 작성했던 기록 중 인디언, 흑인노예, 그리고 외국 무역상에 대한 목록이 있고, 다른 하나는 1790년 이래로 10년에 한 번씩 조사해온 미국 인구조사 중 1860년 8번째 인구조사에 기록된 인디언 보호 구역에 대한 조사목록이 유일하다.

- 9)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를 모든 원주민의 동일한 역사 경험으로 단순히 일반화한다거나 원주민의 노예문화를 백인의 것과 등치시켜 설명했던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은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극복해야 할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중 최근 연구부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tephen Kantrowitz, “White Supremacy, Settler Colonialism and the Two Citizenship of the Fourteenth Amendment”,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10-1(2020), pp. 29-53; Alaina E. Roberts, “A Different Forty Acres: Land, Kin, and Migration in the Late Nineteenth-Century West”,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10-2(2020), pp. 213-232; Antalie Joy, “The Indian’s Cause: Abolitionists and Native American Rights”,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8-2(2018), pp. 215-242; Michael F. Magliari, “Free State Slavery: Bound Indian Labor and Slave Trafficking in California’s Sacramento Valley, 1850-1864”, *Pacific Historical Review*, 81-2(2012), pp. 155-192; Katja May, *Collusion and Collision: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in the Creek and Cherokee Nations, 1830s-1920s* (London/New York: Taylor & Francis, Routledge, 1996); Tyler S. Lyman, *A History of Indian Policy* (Washington: Bureau of Indian Affairs, 1973).

들이 매우 모호하고 심하게 일반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이하 원주민 5부족)을 중심으로 미국 원주민과 흑인노예 관계를 백인, 흑인, 그리고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라는 인종 다자의 시선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원주민들에게 노예제도에란 무엇이었고 흑인에 대한 인종인식은 백인의 인식과 어떤 동일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 백인은 원주민과 흑인의 연대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이러한 인종 간 분리지배가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흑인노예에 대한 인종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 서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원주민과 해방된 노예와의 관계는 어떠했고 어떤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경험했는지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시도가 미국 노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올린 겹겹의 노력들에 한 겹을 보태는 작업이 되길 기대한다.

II. “분리지배(Divide and Rule)”라는 백인의 음모: 남북전쟁 이전 원주민과 흑인노예

미국 원주민 부족들에게 노예제도는 유럽의 수입 문물만은 아니었다. 원주민은 유럽인의 신대륙 도착 이전에도 일종의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경우 노예는 부족 간 전쟁을 통해 얻은 전쟁포로를 지칭했고 전쟁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인력으로 사용되었다. 부족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모계사회였던 원주민 부족은 남성포로와 전사한 부족원의 아내를 혼인관계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손은 노예가 아닌 부족원이 되었다. 또 다른 경우로, 부족 내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부족원을 노예화하는 엄벌로 다스리기도 했는데 죄를 지은 노예가 형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속죄했다고 판단되면 다시 부족원으로 복귀시켜주는 풍습도 있었다.¹⁰⁾ 결국 유럽백인들과의 조우 이전 전통적으로 미국 원주민사회에서 노예는 매때 가능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런데 19세기 전환기에 백인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원주민들의 노예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위계화된 인종주의로 물든 훨씬 파괴적인 성격으로

10)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 465.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미국 원주민들이 흑인노예를 소유의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했던 것은 아니었다. 때때 가능한 재산으로서의 노예라는 개념을 원주민들에게 심어준 것은 백인유럽 무역상과의 교역을 통해서였다. 모피나 가축의 가죽을 교역했던 유럽교역상들과의 직접적 접촉이 잇따르면서 인디언 여성과의 혼종결혼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때 유럽혼혈자손(Euro-Indian)에게는 전통적 풍습에 따라 부족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이들이 백인문화를 들여오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세기 전환기 거의 예외 없이 원주민 중 노예소유주는 유럽무역상이거나 백인혼혈 원주민들이었다.¹¹⁾ 순수혈통의 원주민이 노예를 소유하지 '못함' 이유는 재산으로서의 노예소유가 부적절하거나 부도덕해서라기보다 고질적인 빈곤이 이유였다. 따라서 어떻게든 노예노동력 소유를 희망하던 원주민 중 일부는 조지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대농장에서 흑인노예를 훔치는 경우도 있었고, 드문 경우지만 축토 원주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흑인노예가 우리 부족으로 숨어들었다. 몸뚱이 곳곳에 난 피비린내 나는 상처도 굶주림에 지친 행색도 처참했지만 나는 바로 노예주인이 되었다.”¹²⁾

반대로 원주민들 스스로도 백인의 노예가 되었던 지난한 역사를 경험했다. 식민지시기부터 생존을 위해 남부백인은 노예라는 대체노동력에 의존했고 이것이 남부의 특징이 되었다. 초기 버지니아의 담배로 시작하여 쌀, 사탕수수, 그리고 면화가 뒤를 이으며 남부경제를 지탱했다. 백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토지와 노동력이었고 원주민이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백인들이 미대륙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논리는 황당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이었다. 즉, 수렵과 채취생활로 여기저기 떠돌던 원주민들의 토지권리는 ‘일시적 점유권’에 불과한 반면 원주민이 이동하고 남겨진 땅을 개척하여 정주한 백인들에게는 ‘항구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¹³⁾ 이런 논리와 함께 원주민의 토지를 탈취할 방법으로

11)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37.

12) 강조는 필자의 것임. *Ibid.*, p. 338, 재인용.

13) 오영인, 「20세기 전환기 미국 원주민 동화교육과 새로운 시민정체성을 찾아서」, 376쪽;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21-122.

백인들이 선택한 것은 끊임없는 전쟁이었다. 원주민들에겐 생존 투쟁이 되었던 전쟁은 수많은 원주민을 전쟁포로로 노예화시켜 노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백인들에겐 일거양득의 묘수였다. 전쟁의 명분은 당시 모든 백인 팽창주의자들이 내걸었던 문명화론이었다. 즉, 원주민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야만을 구해야하는 문명화의 사명이 백인이 나아갈 길이며 이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되어야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무력은 정당화되었다.¹⁴⁾ 전후 전쟁포로로 노예화된 원주민은 남부농장에서 중요한 대체노동력으로 흑인노예와 함께 고역을 감수해야했고 일부는 노예 무역상에 의해 서인도제도로 팔려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원주민 노예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전쟁을 통한 원주민 포로의 노예화는 또 다시 전쟁을 야기하며 악순환을 지속했고 그로인해 긴장감을 격화되었다.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주민의 땅을 잠식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토지에 대한 열망과 탐욕은 또 다시 원주민과의 무력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때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이 제시한 해결책이 원주민의 격리였고 그 정치적 결과물이 1830년 인디언 추방법(Indian Removal Act of 1830)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원주민들 자의에 의해 조약을 맺고 스스로 미시시피강 너머 현재의 오클라호마 지역인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으로 이주하는 것을 명시한 이 법률은 실제 거의 15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죽음을 무릅쓴 강제이주였다.¹⁵⁾ 이로 인해 남동부에 남겨진 원주민들은 부족별로 고작 수백 수십 명에 그쳤고 무려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서부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제 전쟁포로로서 원주민 노예노동을 기대하기 어

14) *Ibid.*

15) 인디언 추방법(Indian Removal Act of 1830)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의 이주비용과 본래 정착지에서 소멸된 재산(나룻배나 헛간, 혹은 정리된 밭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보상, 새 정착지에 도착한 이후 1년간의 생계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법안의 실행을 대체로 현장의 백인대리인이 일임받아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즉, 이 기회를 오로지 자신의 재산증식 기회로 본 백인대리인들은 약속된 지원을 착복하기 일쑤였고 이를 감시해야 할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기에 협약 이행여부를 처리하는데 턱없이 미숙했다. 결국 원주민에게 보상으로 지급된 것은 거의 없었다. Tyler S. Lyman, *A History of Indian Policy*, pp. 55-57; David Edmunds, "National Expansion from the Indian Perspective", Frederic E. Hoxi & Peter Iverson, eds., *Indians in American History* (Illinois: Harlan Davidson, Inc., 1998), pp. 148-149.

려웠던 남부사회를 채워나간 것은 더욱 가혹해진 흑인 노예제도였다.

원주민 노예 수가 급감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원주민을 백인사회에 동화시켜 흑인노예로부터 분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원주민과 흑인노예 모두의 공동의 적이었던 백인은 점차 이들의 연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인종 간 연대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은 원주민 강제이주 이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남부백인의 노예문화에서 드러나는 확연한 차이에 근거했다. 물론 부족별로 차이는 있지만, 강제이주 이전 흑인노예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은 억압받는 비백인 소수자라는 동질감 속에서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체로키족의 경우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흑인노예를 배제하지 않았다. 1832년 조지아 주 방위군이 체로키 학교를 기습 방문했을 때 교육받고 있던 2명의 흑인노예를 목격하였다. 당시 조지아는 흑인 교육을 불법으로 규정한 강제무지법(Compulsory Ignorance Law)을 시행하고 있었기에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1827년 이미 자치적 민주정부수립을 선포했던 부족원들은 체로키가 더 이상 조지아의 일부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를 거부하며 맞섰다.¹⁶⁾ 크리크족의 흑인노예 러브 플랜테이션(Love Plantation)은 원주민의 노예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증언하길 “내가 노예인지 순간순간 잊을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나만 특별하게 차별적 노동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¹⁷⁾ 거기다 흑인과의 혼종결혼이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니었고 대부분 흑인혼혈자손은 부족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남부백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원주민 사이에 도망노예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읽고 쓸 수는 없어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흑인노예의 재능이었고 원주민들은 그 재능을 백인과의 교섭 과정에서 통역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원주민과 흑인노예 간 인종연대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집단적 군사 행동이었다. 1830년 세미놀 부족의 원주민 대리인이었

16)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 466; 강제무지법(Compulsory Ignorance La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오영인, 「에보닉스(Ebonics) 논쟁, 미국의 인종역사 속에서 다시보기: 존 보(John Baugh)의 『에보닉스를 넘어서(Beyond Ebonics)』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51집(2020), 88~90쪽.

17)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43.

던 와일리 톰슨(Whiley Thompson)의 기록에 의하면 세미놀 부족 내 많은 흑인노예들은 제한적이거나 본인 소유의 가축을 기르고 노예소유주는 노예가 주인에게 의무만 다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미놀 군대에서 흑인노예는 부족원과 동일 숫자로 훈련에 참여한다고 기록했다.¹⁸⁾ 실제로 강제이주에 대한 원주민의 군사적 저항으로 발발했던 제2차 세미놀 전투(1835-1842)에서 훈련받은 흑인노예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참전했던 연방군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용맹하고 결단력 있던 전사는 흑인병사였고 그들과의 연대가 없었다면 세미놀 부족이 그렇게 오래 연방군에 맞설 수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⁹⁾

상황이 이러하자 백인들은 원주민과 흑인노예 간의 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지배하고자 하였다. 일찍이 역사학자 윌리엄 윌리스는 이를 “분리 지배(Divide and Rule)”라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분할통치로 번역되는 “Divide and Rule”은 피지배자들 사이의 내부분열을 조장하여 지배층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막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배기술이다.²⁰⁾ 원주민과 흑인노예를 분리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백인에 대한 적대감을 비백인 내부의 부정적 인종인식으로 치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시 문명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주민과 흑인노예 사회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야 했던 백인들은 비백인 유색인 사이의 인종적 차이를 강조하는 인종통제 전략을 전개했다. 예컨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흑인은 검은 피부색으로 인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열등인종인데 반해 원주민은 야만적이지만 문명화를 거쳐 변화가 가능한 ‘고상한 야만’으로서 미국 사회에 충분히 동화 가능한 인종이라 추켜세웠다. 덜 검다는 피부색의 차이로 원주민의 상대적 우월감을 자극한 것이다.²¹⁾ 더 나아가 남부 언론들은 원주민이 노예를 소유하고 부리는 것을 가리켜 미국적 삶을 받아들인 “진보의 상징(as an indicator of

18)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p. 465-466.

19) William G. McLoughlin, “Red Indians, Black Slavery and White Racism: America’s Slaveholding Indians”, p. 369.

20) William Willis, “Divide and Rule: Red, White, and Black in the Southeast”, *Journal of Negro History*, 48(1963), pp. 158-159.

21) 19세기 미국의 동화정책 혹은 미국화 정책에 있어서 흑인노예는 아예 고려할 대상도 아니었다.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 123.

progress)”이라 평가하고 따라서 원주민 노예소유주들은 문명사회로의 동화를 촉진할 충실한 문화적 매개자라는 기사를 꾸준히 퍼 날랐다.²²⁾ 더 검은 흑인노예에 대한 우월감의 자극은 단순한 우월감을 넘어 검은 것에 대한 공포심마저 만들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고 원주민들은 그렇게 흑인과의 인종적 장벽을 구축하면서 그 폭과 두께를 늘려갔다.

사실, 자의든 타의든 백인과의 접촉 속에서 원주민들은 점차 백인문화를 좀 더 편안하고 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매력적인 권리에 애착을 보였다. 체로키족의 2인자로서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했던 찰스 히스(Charles Hicks)는 “내 가족을 내 집에서 내 재산으로 안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의 공감을 유도했다. 그리고 만약 흑과 백 사이에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 없이 백인을 선택하겠다고 당당히 주장했다.²³⁾ 점차 남부사회는 흑과 백 양(兩)인종사회로 고정화되어 오로지 두 개의 피부색만 인정하는 곳으로 변모했고 그 속에서 위협요소들은 상존했다. 이런 상황에서 착취의 대상이자 더 검은 흑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원주민들에겐 두려움이었고 이 두려움이 어찌면 원주민들의 미국화 혹은 문명화를 끌어낸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역사학자 마이클 도란(Michael F. Doran)이 지적하듯, 영원한 열등인종 흑인노예와의 차별성 속에서 원주민들은 문명화 즉 미국화를 통해 그들에게 덧칠해진 야만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문화적 올바름(Cultural Correctness)”의 상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²⁴⁾

인디언 강제이주 또한 대체로 우호적이었던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전환시켰던 강력한 계기로 작용했다. 1830년 댄싱 래빗 크리크 조약(Dancing Rabbit Creek Treaty of 1830)으로 가장 먼저 이주 행렬에 내몰렸던 측토족 이후 1847년 그 고통과 치욕을 종결할 때까지 무려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눈물의 길(Trail of Tears)”을 지나 인디언 보호구역에 도착했다. 서부로 이주한 원주민들에게 흑인노예 노동

22) Christopher D. Geist,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pp. 465-466.

23)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 124.

24)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35.

력은 강제이주로 대거 손실된 노동력을 보충해야 하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다. 더구나 1860년 이전까지 인디언 보호구역 내 임금노동자를 극히 제한했던 연방정부의 조치로 인해 흑인노예가 유일한 노동력이기도 했다.²⁵⁾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원주민소유 흑인노예 규모는 1840년 센서스 이전까지 약 4천5백 명에서 5천명 정도였다. 강제이주가 완료된 이후 인디언 보호구역 내 노예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860년 8천여 명 정도였고 부족별로는 체로키족이 가장 많은 2천5백여 명, 측토족이 2천2명여 명, 크리크족이 1천6명여 명, 치카소족이 1천 명 미만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²⁶⁾ 같은 해 인디언 구역의 원주민 총수는 6만5천 명을 넘어섰지만 노예소유주의 비율은 총인구의 2-3%에 불과했다. 그중 상위 1%에 해당되는 원주민은 30명 이상 혹은 1백 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하기도 했다. 나머지 원주민 노예소유주들은 대체로 5명 정도의 노예를 소유했다.²⁷⁾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은 면화와 소금이었다. 그런데 면화도 소금도 모두 노동집약적 작물이었고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자였던 백인이 쓰는 흑인노예 노동력을 백인의 방식 그대로 이식하여 사용했다. 서부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원주민의 경제를 지탱했던 주요 생산물은 가축의 가축이나 옥수수 같은 식재료 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면화였다. 1810년대부터 면직업의 수익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남부 원주민, 특히 체로키와 크리크족은 1820년대부터 이윤을 내기 시작했고 1830년대 들어서면서 적극적 상업 교류를 통해 면화는 남부 원주민경제에 없어서는 안되는 주요 농작물이 되었다. 1817년 첫 방문에서 체로키족이 백인의 면화생산을 곧잘 흉내 내고 있다고 판단했던 스테판 롱(Stephen H. Long)은 10년 후 두 번째 방문에서 흑인노예를 이용한 원주민의 면화생

25) 이 시기 인디언 보호구역 내 백인의 정착도 극히 일부의 종교 활동이나 정부 에이전트를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이었다. *Ibid.*, p. 340.

26) 강제이주 이후 인디언 구역에서 노예 수가 증가한 것은 매마나 도망노예의 유입 등의 이유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자연증가율에 의한 것이었다. Gilbert C. Fite, "Development of the Cotton Industry by the Five Civilized Tribes in Indian Territory",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15-3(1949), p. 348.

27) 인디언 보호구역 내 백인 거주민도 노예를 소유했는데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인이 노예소유주는 아니었고 백인 거주민 중 5%만이 노예소유주였다.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p. 347-348, 도표 참조.

산은 마치 백인남부 경제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모형과 같고 그 성장속도도 놀랍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⁸⁾ 면화생산과 더불어 인디언 구역에서 원주민들이 발견한 수익사업은 소금이었다. 강을 따라 길게 펼쳐졌던 염전지역을 활용한 소금무역은 큰 수입원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를 간파했던 체로키족의 족장 루이스 로스(Lewis Ross)는 몇백 명의 흑인노예를 이용해 1840년대부터 꾸준히 수익을 올렸다. 1839년 축토족 레비 콜버트(Levi Colbert)는 남부백인 못지않은 가혹함으로 500에이커 이상의 농지에서 150명의 흑인노예를 부렸고 로버트 존스(Robert M. Jones) 또한 1850년대까지 300에이커가 넘는 4개의 농장에서 100명이 넘는 흑인노예 노동력으로 면화를 생산했다. 흑인노예에 대한 잔인한 처우로 악명 높았던 체로키족의 제임스 반(James Vann)과 조셉 반(Joseph Vann) 부자(父子)는 잘 알려져 있듯이 300명 이상의 흑인노예 노동으로 부를 축적해나갔다.²⁹⁾ 그렇게 강제이주 이후 인디언 보호구역 내 흑인노예 노동력은 백인남부와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며 착취당했다.

물론 원주민 5부족 모두가 공히 흑인노예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흑인노예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세미놀족은 1천명이 안되는 흑인노예와 함께 서부로 이주했다. 이주한 이후에도 흑인노예에 대한 통제와 처벌은 죽지 않을 만큼의 가혹한 채찍질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휴일을 제외한다거나 휴식시간을 줄이는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을 유지했다.³⁰⁾ 심지어 세미놀족은 연방의 노예해방 이전인 1860년 이미 부족 내 노예제도를 금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이주를 기점으로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는 대체로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백인과의 혼종결혼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세기 초 원주민 노예소유주는 거의 예외 없이 유럽백인혼혈(Euro-Indian)이었다. 이 현상은 강제이주 이후에도 이어져 미국인과의 혼종결혼이 증가했다. 서부에서 백인이 원주민 여성과 결혼을 선호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부족원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부족 영토 내 잠재 농지에 대한 청구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서부 오클라호마라는 험지에 거주하던 백

28) Gilbert C. Fite, "Development of the Cotton Industry by the Five Civilized Tribes in Indian Territory", p. 345.

29) *Ibid.*, pp. 346-347.

30)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 342.

인들 대부분이 경제하층민이었다는 점이다. 즉, 가난했던 백인들은 문명화되어 더 세련되고 경제력이 있었던 원주민 여성을 선택함으로써 신분 상승의 욕구를 해소하고자했던 것이다.³¹⁾

흑인을 노예로 소유했다는 인종적 차별성과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는 백인이 의도한 대로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여준 단적인 예가 1842년 체로키의 흑인 노예반란이다. 1842년 조셉의 아버지 제임스 반(James Vann) 소유의 25명 흑인노예들이 주인의 가혹행위를 더이상 견디내지 못하고 주인의 총과 말, 그리고 일부의 음식과 탄약을 훔쳐 도주를 단행했다. 그들이 행한 곳은 1836년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던 멕시코였다. 남쪽으로 향하던 체로키의 도망노예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때마침 만난 크리크족의 흑인 도망노예 15명과 합류하여 그 세를 불렀으나 13일 만에 모두 잡혔다. 그중 5명은 처형되었고 이때 도망노예를 생포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원주민 전사만 무려 100여 명을 헤아렸다.³²⁾ 이후 체로키족은 자유민을 포함하여 흑인노예의 도주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 100대의 채찍과 체로키족으로부터의 추방을 법제화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이주 이전 흑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허용했던 체로키족은 흑인반란의 가능성 자체를 근절하려는 의도로 흑인에게 읽고 쓰는 교육을 일체 금지하기도 했다.³³⁾ 이런 과정 속에서 백인들은 흑인노예들에게 원주민들의 잔혹성과 야만성을 과장하여 퍼뜨렸다. 만약 노예가 원주민을 살상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유언비어까지 만들며 서로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려 했다. 문제는 당시 인종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끌어내기엔 흑인노예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³⁴⁾

31) David Edmunds, "National Expansion from the Indian Perspective", pp. 151-152.

32) Michael F. Doran,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pp. 344-345.

33) William G. McLoughlin, "Red Indians, Black Slavery and White Racism", p. 381.

34) *Ibid.*, pp. 381-382.

III. 갈등과 적응: 남북전쟁 그리고 전후 원주민과 해방노예

1861년 남부연합(Southern Confederacy)의 섬터요새 공격으로 시작된 미국의 남북전쟁은 최대 7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남긴 4년간의 끔찍한 민족상잔의 아픈 역사다. 흑인노예의 경우 전후 약 400만 명이 해방되었고 그들 중 원주민이 소유였던 해방노예는 7천여 명이었다.³⁵⁾ 노예제도에 대한 원주민 5부족의 인식이나 견해는 조금씩 달랐다. 조금 거칠게 분류하자면 남부연합의 텍사스와 접견지였던 치카스와 족토족은 노예제도를 유지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흑인노예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세미놀 부족원들은 노예제도에 반대했다. 크리크와 체로키족은 부족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 분열상을 보였다. 체로키족의 경우 1860년까지 4천여 명의 가장 많은 노예를 소유했으나 동시에 강경한 반노예제 운동가들도 있었다. 주로 북부출신 선교사들의 지도하에 몇 명 체로키 원주민들은 비밀노예폐지조직인 키투와회(Keetoowah Society)를 결성하기도 했다.³⁶⁾

전쟁이 발발하자 인디언 보호구역의 원주민들은 남북전쟁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전한 부족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백인의 압박에 못이겨 전쟁에 간여한 원주민들도 있었으며 단순한 피해자로서 희생당한 원주민도 다수였다. 연방에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남북전쟁에서 북군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원주민 총수는 약 7천 명 정도였고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족원이 사망했다. 이 수는 당시 대다수의 원주민들이 남부연합 편에서 전투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체 원주민 희생자의 30%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결국, 전후 인디언 보호구역의 인구는 급감했고 고아가 된 아이들과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로 넘쳐났다.³⁷⁾

35) Donald A. Grinde, Jr. &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American Indian Quarterly*, 8-3(1984), p. 212.

36) *Ibid.*, p. 212. 북부 감리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했던 체로키족의 반노예제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Willian G. McLoughlin, "Cherokee Slaveholders and Baptist Missionaries, 1845-1860", *The Historian*, 45-2(1983), pp. 147-166.

37) Jeff Fortney, "Lest We Remember: Civil War Memory and Commemoration among the Five Tribes", *American Indian Quarterly*, 36-4(2012), p.525.

전쟁이 시작된 1861년 당시 북부연합의 인구수는 2천2백만을 넘었고 남부연합의 인수는 9백만 정도였다. 남부의 노예인구 3백5십만을 제외하면 백인은 고작 5백5십만으로 북부의 백인보다 4배 이상이나 적었다. 게다가 1863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 이후 19만 명 이상의 해방노예들이 북군에 입대하면서 남과 북의 전투력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³⁸⁾ 이에 서부 인디언 구역의 10만 명이 넘는 원주민은 남부연합에게는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공간 역시 넓은 농장과 목장의 각종 작물들로 식량배급 및 군수물품의 보고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³⁹⁾ 여기에 남부연합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 1861년 봄 연방국무성의 결정이었다. 1861년 연방은 서남부 방어선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포기하고 구역 내 모든 북군을 철수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강제이주 조약에서 인디언 구역을 안전하게 방어해준다는 조약을 파기한 것이며 이로 인해 남부연합과의 접경지역인 텍사스와 알칸소의 침입을 공식적으로 용인한 것이었다.⁴⁰⁾ 오랜 경험에서 나온 연방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신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확인시켜준 것이다. 결국 원주민은 인디언 영토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남부와 연합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백인들의 전쟁터로 내어주든지 결정해야 했다.

남부연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다가갔다. 남부 접경지인 알칸소의 언론인이자 법조인이었던 알버트 파이크(Albert Pike)를 원주민과의 조약과 동맹체결을 위한 대사로 임명하고 원주민 부족의 영토보호와 안정적인 연금보장을 약속했다. 파이크의 조약내용은 연방이 파기한 약속을 그대로 복기한 것이었다. 1861년 7월 치카소와 흑토족이 제일 먼저 남부연합과 조약을 체결하고 연대했고 뒤이어 8월에는 크리크와 세미놀, 그리고 체로키족이 남부백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조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원주민들은 남부연합이 내세운 전쟁의 대의명분을

38) *Ibid.*, p.525.

39) 남부연합은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흑인노예의 징집을 거부했다. 반대로 남부 흑인노예가 북군에 항복하는 것이 발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총살하였고 북군에게서 포로로 잡은 흑인병사는 즉각적으로 노예로 만들었다. Arrell Morgan Gibson, "Native Americans and the Civil War", *American Indian Quarterly*, 9-4(1985), p. 387.

40) *Ibid.*;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American Indian Quarterly*, 8-3(1984), p. 211.

지지하고 서부경계를 수호하기 위한 군대지원을 약속했다. 치카소와 족토족은 1개의 부대를 크리크와 세미놀도 1개의 부대, 그리고 체로키족이 2개 부대를 지원했다. 남부인들은 한치의 유루 없이 기민하게 “인디언 사병중대(the Company of Indian Soldiers)”를 조직했고 남부연합 육군장군으로 파이크와 더글라스 쿠퍼(Douglas Cooper)를 임명해 이를 통제했다.⁴¹⁾

남부와 동맹 분위기 속에서 원주민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치카소와 족토족은 시종일관 단일대오를 형성했으나 나머지 세 부족은 분열했다. 일부는 남부연합과의 조약체결 과정에서 원주민들 간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없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부족 내부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원주민들에는 남부도 북부도 모두 그들의 토지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말살해온 백인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즉, 토지를 놓고 벌였던 백인과의 오랜 전투와 희생들, 그리고 남동부의 정든 정착지를 뺏기고 강제이주 당해야 했던 쓰라린 아픔에 기인했다. 따라서 그저 “백인의 전쟁(White Man’s War)”일 뿐인 남북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을 지키자는 강력한 주장이 뒤따랐다. 중립의 의지를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체로키 부족장 존 로스(John Ross)와 크리크 부족장 오포슬레이오흐라(Opothleyaholo)였다. 특히 오포슬레이오흐라는 원주민 중 중립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여 약 8천 명의 군을 이끌고 남부연합의 압력에 저항했다. 남부의 입장에서 이들이 북부연합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보다는 중립선언이 훨씬 덜 위험했지만 원주민들이 전쟁 중에 남부연합에 맞선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다. 이에 쿠퍼장군은 오포슬레이오흐라 생포를 목표로 원주민군을 1861년 겨울 3개월 만에 빠르게 공격하고 진압했다. 결국 오포슬레이오흐라는 사살당하고 전투는 패배로 기록되었다. 전투에서 패배한 원주민은 모든 재산을 강탈당했고 그들 중 생존자들은 깊은 숲을 통해 캔자스의 북군에 합류하여 목숨 바쳐 남부연합에 맞서기도 했다.⁴²⁾

남북전쟁은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전쟁은 1865년 6월 23일 남부연합 인디언 총사령관 스탠드 와티(Stand

41)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 133.

42) Arrell Morgan Gibson, “Native Americans and the Civil War”, pp. 388-389.

Waite)의 항복선언으로 종식되었다.⁴³⁾ 전후 연방은 원주민들과 체결했던 기존의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고 1866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조약체결 과정에 돌입했다. 새로운 조약의 큰 틀은 첫째, 노예를 해방하고 해방된 흑인의 수용여부는 부족에 일임한다는 것과 두 번째, 인디언 구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연방에 양도하고 다시 부족을 정비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두 번째 원칙은 전쟁에서 남부연합을 지지했던 원주민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했다. 이로 인해 세미놀족은 부족 토지 중 2백17만 에이커를 1에이커당 15센트에 크리크족은 3백2십5만 에이커를 1에이커당 30센트라는 험값에 연방에 양도했고 체로키족도 캔자스 남동부에 위치한 중립지역을 연방에 양도했다. 치카소와 촉토족은 기존에 8십만 달러에 연방에 임대했던 토지의 임대료를 대폭 삭감하여 3십만 달러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했다.⁴⁴⁾ 연방은 이렇게 양도받은 서부 땅을 모두 경매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연방의 보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원주민 5부족에게만 허가되었던 인디언 보호구역을 1870년부터 다른 원주민 부족에게도 허용했고 1889년이 되면 비(非)원주민, 즉 백인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인디언 구역 내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다.⁴⁵⁾ 아래 도표의 인디언 보호구역 내 인종별 인구비율을 보면, 1870년에 원주민이 87% 백인이 3% 흑인이 10%였던 반면에 1890년 조사에 따르면 흑인은 11%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백인이 61%로 급증했고 원주민은 28%에 그치면서 인종비율이 전환되었다. 백인의 서부이주와 유입을 부추긴 것은 가축이나 농산물의 상업적 이익도 있었지만 석탄과 목재와 같은 자연자원의 풍부함 때문이었다. 특히 1889년 체로키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수의 백인들이 들어왔다.⁴⁶⁾ 결국 전후 25년 만에 원주민들은 그들의 땅에서 절대 소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43)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2.

44) Arrell Morgan Gibson, "Native Americans and the Civil War", p. 406.

45) *Ibid.*, p. 406;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33-134.

46)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7.

<인디언 보호구역 내 인종별 인구증감, 1870-1890>

| | 1870 | % | 1890 | % |
|-----|--------|------|---------|------|
| 인디언 | 59,367 | 87% | 50,055 | 28% |
| 흑인 | 6,378 | 10% | 18,636 | 11% |
| 백인 | 2,407 | 3% | 109,393 | 61% |
| 총인구 | 68,152 | 100% | 178,097 | 100% |

출처) Donald A. Grinde, Jr. &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7

그렇다면 남북전쟁 이후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원주민들과 해방된 흑인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백인남부와 마찬가지로 흑인은 철저하게 주인의 영역에서 분리된 채 해방 이전의 노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제한적이거나 원주민 사회에 동화되었는가? 원주민과 해방노예와의 상호관계는 어떠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전후 연방은 원주민들에게 노예해방 명령과 동시에 부족 별로 그 해방된 노예의 수용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인디언 구역에서 흑인의 운명은 노예를 해방시킨 흑인의 보호자(?)로서 연방정부의 역할이나 혹은 원주민 부족의 결정에 달려있었다. 예상할 수 있듯 연방정부의 해방된 흑인에 대한 태도는 모호함 그 자체였다. 연방은 패전한 남부에 해방노예국(Freedman's Bureau)을 설치하여 극빈했던 해방노예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아무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유명무실한 기구로 역사에 남겨졌을 뿐이고 그 외 해방된 노예문제로 남부백인들을 또 한 번 자극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연방의 아무런 도움 없이 더구나 연방의 보복성 제재 속에서 원주민들은 해방된 흑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기도 했고 제한적이거나 동화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 부족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원주민 사회에서 흑인은 재산소유가 허용되었고 원주민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남부의 해방노예 누구도 누리지 못한 경제적·시민적 권리였다.

전통적으로 흑인노예에게 우호적이었던 세미놀과 크리크족은 해방된 흑인에게 부족원과 동일한 부족시민권을 주어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게 했다. 체로키족의 경우도 해방된 흑인에게 부족시민권을 부여했는데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전쟁 이전 체로키 영토 내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1866년까지 거주한 자 혹은 영토 외에 있더라도 1866년 이후 6개월 이내로

되돌아온 자까지 부족시민권을 허가했다. 따라서 기한 내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남편이자 아내 혹은 그 자손들은 돌연 외부인 혹은 침입자로 취급되기도 했다. 체로키 부족장이었던 루이스 다우닝(Lewis Downing)도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즉, 조건에 맞지 않아 체로키 부족시민권을 박탈당한 다우닝은 연방의 도움을 요청해 중재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⁴⁷⁾ 흑인과의 혼종결혼에 있어서도 크리크족과 세미놀족은 어떠한 제재도 없었으나 족토족은 부족원 간의 결혼만을 인정했다. 그런데 치카소와 족토족이 1883년 흑인에게 부족시민권을 인정한 이후 1885년부터는 흑인과의 혼종결혼을 아예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로키도 혼종결혼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여 백인과의 혼종결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흑인과의 혼종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었다.⁴⁸⁾

문화적으로도 원주민 사회에서 해방 노예들의 적응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미놀과 크리크족에서 해방된 흑인들은 익숙했던 영어가 아닌 부족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원주민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복장으로 부족 종교를 숭배하기도 했다. 그 외 정치참여나 교육의 기회도 부족마다 다양한 양태를 보였다. 부족원으로서 온전한 시민권을 인정했던 크리크와 세미놀족은 일찌감치 흑인의 정치참여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1875년 세미놀족 전체 14개 타운에서 선출된 14명의 대표 중 6명이 흑인 혹은 흑인혼혈이었고 같은 해 체로키족에서도 흑인이 부족의회에 선출되는 이변을 보여주었다. 크리크족에서는 1876년 제시 프랭클린(Jesse Franklin)이라는 최초의 부족 대법관이 선출되기도 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기업가로 성장한 흑인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수송선 선장이나 이발사, 조면기 제조사로 활동했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식당을 운영하거나 식자재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기업가로 성장하기도 했다.⁴⁹⁾

해방된 흑인이 부족원들과 적응하며 동화하는 과정이나 양태가 모든 원주민 사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갈등 양상을 보여준 원주민들도 있었다. 원주민 5부족 중 노예제도의 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치카소와 족토족의 경우 해방노예에 대한 처우가 가장

47) Willian G. McLoughlin, "Cherokee Slaveholders and Baptist Missionaries, 1845-1860", p. 147.

48)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 216.

49) *Ibid.*, p. 215.

가혹했다. 백인남부의 분리정책(Seperat-but-Equal)과 비슷하게 블랙코드(Black Code)를 정하여 해방된 흑인을 가장 값싼 노동자로 위치 지웠고 이에 저항하면 처벌하거나 투옥하였다. 자유민 흑인으로 흑시 부족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흑인은 공직에 선출될 수 없었고 투표권도 박탈당했으며 재산 소유마저도 제한적이었다. 만약 집단적으로 저항할 경우 재고의 여지 없이 부족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전후 20년간 치카소와 축토부족에서 합법적 부족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은 흑인은 없었다. 이후 1883년 연방으로부터 고작 5만2천 달러의 토지임대료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형식적으로나마 흑인의 부족시민권을 인정했다.⁵⁰⁾

원주민들의 이러한 해방노예에 대한 적대적 행위나 반감은 흑인에 대한 양가적 인식에 근거한다. 즉, 영어와 부족어의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했던 흑인은 많은 경우 백인과의 교섭 과정에서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동일한 이유로 변질 가능한 인종이라는 의심을 쉽게 받기도 했다. 또한 만약 인디언 구역에서 원주민의 해방된 흑인과 남부의 해방흑인이 합세하여 흑인만의 공동지역을 구축한다면, 그리고 그 흑인연대가 백인과는 또 다른 위협으로 상존한다면 결국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상상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⁵¹⁾ 이는 노예소유주로서 덜 겁다는 인종적 차별성과 상대적 우월감을 경험해온 원주민들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새겨진 인종적 편견의 발로이자 결국, 19세기 전환기부터 거세게 몰아붙인 분리지배라는 백인의 음모가 궁극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역사 속에서 원주민과 흑인, 그리고 백인 간의 상호작용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복합적이다. 그저 서로 다른 얼굴색의 만남도 아니었고 어느 한 인종의 흑은 어느 한 부족의 경험을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도 없다. 특히 미국의 노예제도에 있어서 스스로 노예이기도 했고 노예를 소유한 노예소유

50)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p. 212-213; Theda Perdue, "Indians in Southern History", pp. 133-134.

51) Donald A. Grinde,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pp. 213-214.

주이기도 했던 원주민들의 역사 경험은 결코 백인과 유리된 채 생각할 수 없다. 원주민들은 같은 피착취자라는 동질감 속에서 흑인노예와 연대하기도 했으나 주인인 백인의 의도적 지배전략에 따라 서로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으로 내부에 인종 장벽을 쌓으며 극단적 갈등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원주민과 흑인에게 공동의 적이었던 백인에 대한 반감을 비백인 내부의 갈등과 적개심으로 치환하고자 했던 백인의 지배 음모는 성공적이었고 원주민들은 미국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종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북전쟁에 대해 흔히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남북전쟁은 전후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의 희생자를 포함한 숫자보다 많은 희생자를 낸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결코 백인과 흑인만 희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원주민의 희생은 지워져 있다. 남북전쟁을 기리는 대중적 기념행사들, 곳곳에서 행해지는 동상 건립을 포함한 기념물 설치 등 관련한 모든 기억의 정치에서 원주민들은 잊혀진지 오래고 남과 북이 아닌 서부 인디언 보호구역 또한 존재하나 사라진 공간이다. 사실 인디언 보호구역 원주민 스스로도 남북전쟁을 기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⁵²⁾ 이유는 명확하다. 남북전쟁에서 연방 북군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남군은 재건기를 거치며 해방된 노예를 그대로 노예상태로 전락시키면서 남북전쟁의 사실상 승리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전쟁 중 누구를 지지했든 상관없이 전쟁에서도 전후 재건기를 거치면서도 언제나 지워진 존재로 점철되었다. 인디언 보호구역의 농지는 전쟁으로 크게 훼손되었고 그 위에 남은 것은 전후 연방의 보복과 남부의 기만뿐이었다. 따라서 미국 원주민들은 노예해방 혹은 잃어버린 명분(Lost Cause)이라는 ‘신화 만들기’에 동참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즉, 정작 자신의 역사는 지워진 ‘그들만의 과거 기억하기’의 일부이길 거부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제 원주민들은 더이상 백인미국 사회의 희생자로만 혹은 노예소유주로서 흑인노예의 가해자로만 남겨져선 안된다. 부정의 역사이든 긍정의 역사이든 원주민 스스로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줄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조교수, yioh@ptu.ac.kr

52) Jeff Fortney, "Lest We Remember: Civil War Memory and Commemoration among the Five Tribes", p. 526.

주제어(Key Words):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The 5 Civilized Tribes), 흑인노예(Negro Slave), 분리지배(Divide and Rule), 문화적 올바름(Cultural Correctness), 남북전쟁(Civil War), 해방노예(Freedman)

투고일: 2022.10.17. 심사일: 2022.11.12. 게재확정일: 2022.11.14.

<국문초록>

미국 남북전쟁 전후 원주민의 노예문화와 흑인노예

오 영 인

노예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과에서 학제적으로 두텁게 연구되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 연구대상이 오로지 백인노예주와 흑인노예라는 양(兩)인종 관계에 매몰되어있다는 점이다. 미국 원주민의 역사 또한 노예제도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인디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백인, 원주민, 그리고 흑인노예(후에 해방된 흑인)와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물론 사료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원주민 부족의 개별적 역사 경험을 무시하고 원주민의 노예제도를 백인의 노예제도와 뭉뚱그려 마치 동일한 노예문화를 향유한 것으로 설명한다거나 어느 한 부족의 경험을 원주민 전체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그것을 당연시했던 오류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문명화된 인디언 5부족’을 중심으로 미국 원주민과 흑인노예와의 관계를 백인, 흑인, 그리고 다양한 원주민 부족이라는 인종 다자의 시선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원주민들에게 노예제도란 무엇이었고 흑인에 대한 인종인식은 백인의 인식과 어떤 동일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 백인은 원주민과 흑인의 연대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이러한 인종 간 분리지배가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인종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 원주민과 해방된 노예와의 관계는 어떠했고 어떤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경험했는지 또한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American Native Indians' Culture of Slavery and Black Slaves
Before and After the Civil War**

Oh, Young-In

Studies on American slavery system and racial relations has been discussed in history alongside other diverse academic disciplines. Yet previous studies has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hite slaveowners and black slaves even though American Native Indians had been directly interconnected with slave system and the Civil War. In fact, insufficient historical materials about the effect of slavery system on Native American societies might be a reason, yet there is a more important reason. Previously, scholars have either regarded the slavery system of Native Indians as a replica of southern slavery or generalized some historical experiences of one tribe as a model of the whole Indian tribes. Based on these problems, focusing on the 5 civilized tribes, this study try to explore the extremely diverse and complex relations among American Native Indian, Black slaves, and White. In other words, it will pay more attention of the questions such as what was the slavery system to Native Indians?; how did Indian's racial consciousness toward black slaves differ from the one of whites's or how similar?; why did white America break out a solidarity between native Indians and black slaves using the "Divide and Rule" strategy?; and how did this racial control technique affect on the process of racial consciousness of native Indian societies? In addition, it will explain the meaning of the Civil War for native Indians in the Indian Reservation, and the process of adjustments or conflicts between native Indians and black freedmen after the Civil War.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양홍석, 『고귀한 야만: 버팔로 빌 코디의 서부활극을 통해 본 미국의 계급, 인종 그리고 폭력』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Edmunds, David, “National Expansion from the Indian Perspective”, Frederic E. Hoxi, Peter Iverson, eds., *Indians in American History* (Illinois: Harlan Davidson, Inc., 1998), pp. 140–155.
- Lyman, Tyler S., *A History of Indian Policy* (Washington: Gureau of Indian Affairs, 1973).
- May, Katja, *Collusion and Collision: African 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in the Creek and Cherokee Nations, 1830s–1920s* (London/New York: Taylor & Francis, Routledge, 1996).
- Perdue, Theda, “Indians in Southern History”, Frederic E. Hoxi, Peter Iverson, eds., *Indians in American History* (Illinois: Harlan Davidson, Inc., 1998), pp. 121–139.

2. 논문

- 안용훈, 「미 연방정부의 인디언원주민 정책」, 『민족연구』, 49호 (2012), 4~18쪽.
- 오영인, 「20세기 전환기 미국 원주민 동화교육과 새로운 시민정체성을 찾아서」, 『동국사학』, 72집(2021), 369~405쪽.
- 오영인, 「에보닉스(Ebonics) 논쟁, 미국의 인종역사 속에서 다시보기: 존 보(John Baugh)의 『에보닉스를 넘어서(Beyond Ebonics)』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51집(2020), 71~101쪽.
- Abel, Annie Heloise, “The Indians in the Civil War”,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5–2(1910), pp. 281–296.
- Doran, Michael F., “Negro Slaves of the Five Civilized Trib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8–3(1978), pp. 335–350.
- Fite, Gilbert C., “Development of the Cotton Industry by the Five

- Civilized Tribes in Indian Territory”,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15-3(1949), pp. 342-353.
- Fortney, Jeff, “Lest We Remember: Civil War Memory and Commemoration among the Five Tribes”, *American Indian Quarterly*, 36-4(2012), pp. 525-544.
- Geist, Christopher D., “Slavery Among The Indians: An Overview”, *Negro History Bulletin*, 38-7(1975), pp. 465-467.
- Gibson, Arrell Morgan, “Native Americans and the Civil War”, *American Indian Quarterly*, 9-4(1985), pp. 385-410.
- Grinde, Donald A. Jr., Quintard Taylor, “Red vs. Black: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the Post Civil War Indian Territory”, *American Indian Quarterly*, 8-3(1984), pp. 211-229.
- Holland Braund, Kathryn E., “The Creek Indians, Blacks, and Slavery”,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57-4(1991), pp. 601-636.
- Joy, Antalie, “The Indian’s Cause: Abolitionists and Native American Rights”,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8-2(2018), pp. 215-242.
- Kantrowitz, Stephen, “White Supremacy, Settler Colonialism and the Two Citizenship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10-1(2020), pp. 29-53.
- Magliari, Michael F., “Free State Slavery: Bound Indian Labor and Slave Trafficking in California’s Sacramento Valley, 1850-1864”, *Pacific Historical Review*, 81-2(2012), pp. 155-192.
- McLoughlin, Willian G., “Red Indians, Black Slavery and White Racism: America’s Slaveholding Indians”, *American Quarterly*, 26-4(1974), pp. 367-385.
- _____, “Cherokee Slaveholders and Baptist Missionaries, 1845-1860”, *The Historian*, 45-2(1983), pp. 147-166.
- Roberts, Alaina E., “A Different Forty Acres: Land, Kin, and Migration in the Late Nineteenth-Century West”,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10-2(2020), pp. 213-232.
- Willis, William, “Divide and Rule: Red, White, and Black in the Southeast”, *Journal of Negro History*, 48-3(1963), pp. 157-176.

3. 인터넷자료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1506282209225#c2b> (검색일: 2022. 09. 30).

<https://www.nocutnews.co.kr/news/882952> (검색일: 2022. 05.25).

<https://www.yna.co.kr/view/AKR20070305102800009> (검색일: 2022. 05.25).